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. 11. 26(화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630호

나. 제 출 자 : 고성미 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2. 제안이유

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, 구의원을 공유재산심의회에 포함시켜 의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고 금천구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에 구의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4조제3항)
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항 중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신설하고,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(안 제7조)
- 다.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(안 제33조제3항)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10조의3. 제49조 제3항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47조, 제51조

5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을 포함하고,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며, 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,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공유 재산의 관리를 감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 위촉대상자로 금천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신설하고,
 -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 사항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체납내역, 불법 무단 사용 여부를 신설하고,
 -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실태 조사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 자료에 기록해야 할 추가 사항으로 사용·대부료 체납 재산을 규정함.
 -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조치계획 수립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 처분,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, 사용·대부료 체납대책을 추가 신설함.
 - 안 제7조 제5항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규정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보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.
- 「지방자치법」제51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별개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
- 법령상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「지방자치법」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집행 기관에 대한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제처에서는 의견을 제시(법제처 의견21-0015)하고 있음
-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대신 제출로 완화한 것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되며,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금천구 공유재산 업무 로드맵. 끝.

붙임 1 관계법령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4. 7. 10.] [대통령령 제34657호, 2024. 7. 2., 타법개정]

제10조의3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 산심의회(이하 "공유재산심의회"라 한다)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. <개정 2020. 3. 31.>

- 1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2. 국유·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
- 3. 그 밖에 지방재정, 부동산,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 을 갖춘 사람
-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4. 20.>
-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7. 20.]

[제7조의2에서 이동 <2022. 4. 20.>]

- 제49조(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)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(地目)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 유재산 실태조사표(사진을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8. 4.>
 -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,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 8. 4., 2018. 12. 4.>
 - 1.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
 - 2. 주위 환경
 - 3. 이용 현황
 - 4.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・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9. 4. 24.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·확정
- 3. 결산의 승인
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 · 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 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붙임 2 금천구 공유재산 업무 로드맵

	금천구 공유재산 업무 로드맵	
		(2024년도 기준)
1월중	•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수립	
	• 감정평가 업무 약정체결 및 운영계획 수립	NO. OF THE PROPERTY OF THE PARTY OF THE PART
	• 1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	
	• 공유재산심의회 개최(수시분)	
•		
3월중	• 공유재산심의회 개최(수시분)	
•		
4월종	• 2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	
	• 국·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수립	1000-1000-1000-1000-1000-1000-1000-100
•		
5월중	• 공유재산심의회 개최(수시분)	
•		
7월종	• 3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	
•		
8월중	• 공유재산심의회 개최(수시분)	
•		
9월종	• 시유재산 무상사용 자기계약을 위한 심의회 자료 제출	
•		
10일중	• 차년도 공제희 예산편성을 위한 공제등록 수요 조사	
	• 4분기 공유재산심의 이후 진행상황 모니터링 실시	0
	• 2025~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	
•		
11월종	• 공유재산심의회 개최(정기분)	
•		
12월초	•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공제등록대상 변동사항 조사	
0		
12월중	• 국·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	